

「2023서울모빌리티쇼」 참가업체 모집 공고

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2023년 3월 30일(목)부터 4월 9일(일)까지 KINTEX에서 개최되는 「2023서울모빌리티쇼」 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서울모빌리티쇼는 OICA(세계자동차산업협회) 공인 국제행사로서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, 자동차 문화를 담아내는 국내 최대의 산업전시회입니다.

자동차 및 모빌리티 관련 업체들의 이미지 제고, 마케팅 강화, 관련 기업간의 협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「2023서울모빌리티쇼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2023서울모빌리티쇼 개요

가. 전시기간 : 2023. 3. 30(목) ~ 4. 9(일) [11일간]

- 프레스테이 : 3. 30(목)
- 일반인 관람 : 3. 31(금) ~ 4. 9(일) [10일간]

나. 장 소 : 킨텍스(KINTEX)

다. 주 제

- Sustainable · Connected · Mobility(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)
 -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
 - 무한한 연결이 가능한 지능화된 자동차
 - 기존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모빌리티의 새로운 비전

라. 부대행사

- 자동차와 IT융합 세미나
- 자동차안전체험,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시승행사
- 비즈니스상담회, 기술세미나 등

마. 주 최 :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(KAMA, KAIDA, KAICA)

※ KAMA(한국자동차산업협회), KAIDA(한국수입자동차협회), KAICA(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)

2. 참가 신청

가. 참가대상 : 모빌리티 관련 제품, 기술, 서비스를 전시하고자 하는 업체, 단체, 기관

① 모빌리티 하드웨어(완성차, 부품, 이동관련 분야)

- 승용차, 상용차, 슈퍼카, 튜닝카 및 캠핑카, 이륜차 등
- 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차 등
- 자동차 부품 산업 전반 : 모빌리티 부품, 튜닝 부품, 타이어 등
- 미래 모빌리티 부품 : 전기구동시스템, 배터리, 모터, 충전기술, 인프라 등
- 모빌리티 관련 제품 : 장식품, 액세서리, 보조기기 등
- 퍼스널 모빌리티 : 전기자전거, 전동휠, 킥보드 등
- 항공 모빌리티 : 도심항공(UAM; Urban Air Mobility), 지역간 항공(RAM; Regional Air Mobility), 드론, 우주항공 등
- 철도모빌리티 및 하이퍼루프, 선박모빌리티, 로봇모빌리티 등
- 기타 모빌리티 산업이나 모빌리티 문화와 연관되는 분야

② 모빌리티 소프트웨어(서비스 및 기술 분야)

- 모빌리티 서비스
 - 차량공유 : 카셰어링, 카헤일링, 라이드셰어링, 셔틀버스, 렌트
 - O2O : 대리운전, 중고차, 정비, 세차, 주차
 - 라스트마일 : 배송, 공유자전거, 공유킥보드
 - 통합교통서비스 : 지도, 자율주행, 빅데이터, ITS, 지급결제, 보안 등
- 모빌리티 기술 스타트업 및 육성 분야
 - 자율주행 : 레이더, 라이다, 렌즈, SW 등
 - 모빌리티 융합기술 : IT, IoT, 전기·전자, 제어, 디자인 등

나. 참가신청기간 : 2022년 8월 22일(월) ~ 10월 31일(월)

다. 참가비

① 일반전시

- 독립식 부스 : 참가업체가 배정된 전시면적에 자체적으로 전시 구조물을 설치·공사하는 부스
- 조립식 부스 : 주최자가 전시공간으로 설치·공사하여 제공하는 부스(1부스=3m×3m)

(부가세 별도)

독립식 부스	조립식 부스
220,000원/m ²	2,600,000원/부스

※ 주최자가 기획한 특별전시전 및 전략적 유치활동에 따라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시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참가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② 용품판매전시

-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관련 용품(장식품, 액세서리 및 보조 기기 등)을 전시·판매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스

(부가세 별도)

독립식 부스	조립식 부스
300,000원/m ²	3,300,000원/부스

라. 참가신청

- ① [별첨 1]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의 50% 이상을 납부하여야만 참가신청이 유효하며, 잔금은 2022년 12월 16일(금)까지 완납해야 함.
- ② 신청마감일인 2022년 10월 31일(월)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.
- ③ 주최자가 기획한 특별전시전 및 전략적 유치활동에 따라 참가하는 업체의 참가신청과 참가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적용함 (외국기관이 다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참가하는 경우 포함).
- ④ 독립식 부스 신청
 - 전시면적 신청 기준
 - 완성차업체는 100m² 단위로 신청토록 함.
 -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는 최소 36m² 이상 신청하며, 부스설계를 고려하여 9m² 단위로 추가 신청토록 함.

- 100㎡ 이상 신청한 참가업체는 주최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복층 구조물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.
- 다수의 기업을 유치하여 참가하는 별도의 협회나 기관(단체)은 주최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독립부스 내에 소수 참가기업들의 전시공간을 자체 구성할 수 있음.
- 연속 참가사에 대한 혜택

구분	내용
최근 3회('17년, '19년, '21년) 연속 참가사	신청면적의 5% 면적 추가 제공
최근 4회('15년, '17년, '19년, '21년) 연속 참가사	신청면적의 8% 면적 추가 제공
최근 5회('13년, '15년, '17년, '19년, '21년) 이상 연속 참가사	신청면적의 10% 면적 추가 제공

- ※ 단, 이번 회차 독립부스 100㎡이상 신청한 기업에 한함 (타 할인제도와 중복 불가)
 - 과거 연속 참가 이력은 참가면적이 아닌 횟수만 적용
- ※ '21년의 경우 특수한 상황(COVID-19)에 따른 예외 적용
 - ex) '17년(참가), '19년(참가), '21년(미참가) : 3회 연속 참가로 인정

⑤ 조립식 부스 기본제공 사항

- 3면 칸막이(부스 위치에 따라 1~3면만 칸막이 설치 가능)
- 국·영문 상호 간판 및 부스번호판
- 전기(단상 220V 1kW) 배선, 콘센트 및 조명등
- 안내 데스크 및 의자 각 1개, 라운드 테이블 및 의자 2개
- 부스 내부 바닥 파이텍스

⑥ 참가비에는 전시장 임차료, 전시장 관리에 따른 경비·청소 등 공동 용역비, 전시홍보비 등 포함

- ※ 전기, 전화, 압축공기, 급배수 등 각종 부대시설 사용료와 전시장 임차료에 포함된 전시장 이용시간(08:00~20:00) 이외의 전시장사용료 등 킨텍스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시설사용료는 참가업체가 별도 부담

⑦ 참가신청서류는 서울모빌리티쇼 홈페이지(www.mobilityshow.or.kr)를 통해서 신청

- 한국자동차산업협회(KAMA),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(KAICA)에 소속된 회원사의 경우 해당 협회를 통해서 신청 가능
- KAMA와 다수 기업의 모빌리티쇼 참가 유치에 관한 공식협약을 체결한 협회 또는 기관(단체)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 또는 기관(단체)을 통해서 신청

마. 참가비 납부

- 참가비는 지정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
 - 신한은행(SWIFT CODE : SHBKRRSE) 140-005-228472, (예금주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)
- ※ 은행송금 관련 수수료는 참가자 부담
- ※ 지정된 계좌에 입금 완료된 시점을 참가신청 기준으로 함
-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(부가세 면제)에 따라 참가비 납부시 부가세 10%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
- 신청마감일인 2022년 10월 31일(월)까지 100% 완납할 경우 참가비의 10% 할인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
 - 단, 중복할인 불가
- 2022년 10월 31일(월)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는 참가신청과 함께 참가비의 100%를 완납해야 함.
- 2022년 10월 31일(월) 이전까지 참가비 50%이상을 납부하고 최종 납입기한(2022년 12월 16일)을 경과한 1개월(2023년 1월 16일)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.

바. 전시위치 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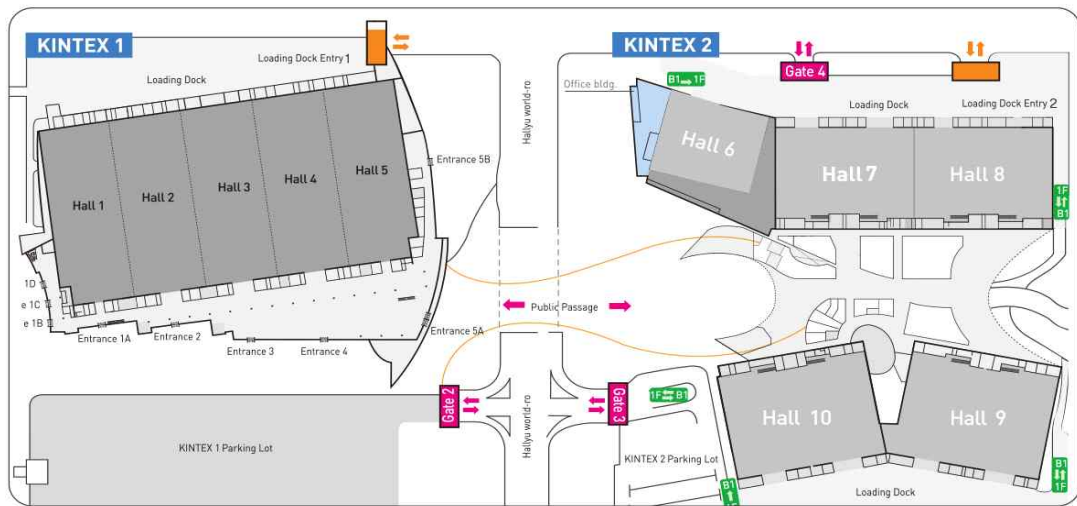
-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전시면적 규모 순, 동일 면적 시 참가신청 (참가비의 50% 이상 납부) 순으로 전시위치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.
 - 상기 원칙에 따른 배정이 어려울 경우 전회 서울모빌리티쇼 참가면적, 최근 3회 서울모빌리티쇼 참가횟수 등의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함.
 - 단, 수입차업체(참가비의 50% 이상을 납부한 업체)에 대해서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가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라 전시 위치와 면적을 배정함.
- 주최자가 서울모빌리티쇼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참가업체는 전시위치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.
- 주최자는 모빌리티 관련 용품(장식품, 액세서리 및 보조기기 등)을 전시·판매하는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전시품특성과 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임의로 전시공간을 별도 배정할 수 있음.

-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업체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(최근 3회 서울모빌리티쇼 참가횟수를 고려하여 업체간 조정률에 차등을 둘 수 있음).
- 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음.

사. 참가업체는 [별첨 3]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관리 규정” (제2022-1호)을 준수해야 함.

※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관리 규정” 제10조 제1항의 보충규정인 “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”과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”은 홈페이지 (www.mobilityshow.or.kr)에 게재되어 있으며, 상기 지침과 관련된 각종 서식 및 지정 업체 안내는 향후 공지 예정

<참고> 킨텍스 전시장 구성도



3. 신청서류 제출

가. 신청서류

- 참가신청서 1부([별첨 1] 서식 사용)
 - 단, 서울모빌리티쇼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참가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작성단계와 양식에 따라 신청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위임장 1부([별첨 2] 서식 사용)
 - * 외국법인(기업)이 자사의 한국내 법적 대리법인(에이전트, 딜러, 지점 등)이 없어 제3의 법인(기업)을 통해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는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(단, 해외자동차 제조업체와 공식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서울모빌리티쇼 참가 불가)
- 제품 카탈로그(용품판매전시 신청업체에 해당)

나. 제 출 : 서울모빌리티쇼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중 택일

①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(한국자동차산업협회)

- 홈페이지 : www.mobilityshow.or.kr
- 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5(자동차회관)
- 전 화 : 02-3660-1884/1894
- 이 메 일 : sms@kama.or.kr

② 한국수입자동차협회
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1(PSG빌딩 6층)
- 전 화 : 02-518-9924
- 이 메 일 : kaida@kaida.co.kr

③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

- 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9-22(자동차산업회관)
- 전 화 : 02-587-0017
- 이 메 일 : jhkim@kaica.or.kr

[별첨 1]

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신청서(계약서)

참가업체

회사명 (단체/협회/기관)	국문		대표자	
	영문			
주소				
담당자	성명		직위	
	부서		이메일	
	직통번호		휴대폰	
	홈페이지			
전시품목				

전시면적 신청 및 참가비

■ 일반전시

(부가세 별도)

구분	참가비 단가	전시신청 면적	참가비 총액
독립식 부스	220,000원/m ²	m ²	원
조립식 부스	2,600,000원/부스	부스	원

주) 1부스 = 3m×3m

■ 용품판매전시

(부가세 별도)

구분	참가비 단가	전시신청 면적	참가비 총액
독립식 부스	300,000원/m ²	m ²	원
조립식 부스	3,300,000원/부스	부스	원

주) 1부스 = 3m×3m

참고사항

- 참가신청서는 서울모빌리티쇼 홈페이지(www.mobilityshow.or.kr) 또는 이메일 (sms@kama.or.kr) 중 택일하여 제출
 -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,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에 제출
 -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다수 기업의 서울모빌리티쇼 참가 유치에 관한 공식협약을 체결한 협회 또는 기관(단체)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나 기관(단체)에 제출
 -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서울모빌리티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
- 참가비 지정은행 계좌
 - 신한은행(SWIFT CODE : SHBKRRSE) 140-005-228472, 예금주(한국자동차산업협회)
-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참가비 납부시 부가세 10% 제외한 금액을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
- 문의
 -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/한국자동차산업협회(KAMA) : 전화 02-3660-1884/1894
 -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 : 전화 02-518-9924
 -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(KAICA) : 전화 02-587-0017

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모집공고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22-1호)”와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관리 규정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2-1호)”을 준수하고, 양 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하며, 본 계약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회사명		대표자명	서명
-----	--	------	----

[별첨 2]

위 임 장

■ 외국 참가업체(위임자)

회 사				
주 소				
담당자	성 명		직 위	
	부 서		이메일	
	직통번호		휴대폰	

당사는 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 업체를 한국내 대리업체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며, 아울러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모집공고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22-1호)”와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관리 규정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2-1호)”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직위(대표자 또는 부서 책임자) :

성 명 : 서명

■ 한국 대리업체(수입자)

회 사				대표자	
주 소					
담당자	성 명		직 위		
	부 서		이메일		
	직통번호		휴대폰		

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관리 규정

제1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“모빌리티쇼” 라 함은 2023서울모빌리티쇼를 말한다.
- ② “참가업체” 라 함은 본 모빌리티쇼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, 모빌리티쇼 전시기간 동안 본 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업체(단체 및 기관 포함)를 말한다.
- ③ “주최자” 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를 말한다.

제2조 (전시품목) 모빌리티쇼에 전시가능한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모빌리티 하드웨어(완성차, 부품, 이동관련 분야)
 - 승용차, 상용차, 슈퍼카, 튜닝카 및 캠핑카, 이륜차 등
 - 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차 등
 - 자동차 부품 산업 전반 : 모빌리티 부품, 튜닝 부품, 타이어 등
 - 미래 모빌리티 부품 : 전기구동시스템, 배터리, 모터, 충전기술, 인프라 등
 - 모빌리티 관련 제품 : 장식품, 액세서리, 보조기기 등
 - 퍼스널 모빌리티 : 전기자전거, 전동휠, 킥보드 등
 - 항공 모빌리티 : 도심항공(UAM; Urban Air Mobility), 지역간 항공(RAM; Regional Air Mobility), 드론, 우주항공 등
 - 철도모빌리티 및 하이퍼루프, 선박모빌리티, 로봇모빌리티 등
 - 기타 모빌리티 산업이나 모빌리티 문화와 연관되는 분야
- ② 모빌리티 소프트웨어(서비스 및 기술 분야)
 - 모빌리티 서비스
 - 차량공유 : 카셰어링, 카헤일링, 라이드셰어링, 셔틀버스, 렌트
 - O2O : 대리운전, 중고차, 정비, 세차, 주차
 - 라스트마일 : 배송, 공유자전거, 공유킥보드
 - 통합교통서비스 : 지도, 자율주행, 빅데이터, ITS, 지급결제, 보안 등
 - 모빌리티 기술 스타트업 및 육성 분야
 - 자율주행 : 레이더, 라이다, 렌즈, SW 등
 - 모빌리티 융합기술 : IT, IoT, 전기·전자, 제어, 디자인 등

제3조 (참가신청)

- ① 참가신청서류는 모빌리티쇼 홈페이지, 우편, 팩스, 이메일 중에서 택일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② 한국자동차산업협회(KAMA),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,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(KAICA)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를 통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.
- ③ KAMA와 다수 기업의 모빌리티쇼 참가 유치에 관한 공식협약을 체결한 협회 또는 기관(단체)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나 기관(단체)을 통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모빌리티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한다.
- ⑤ 참가신청서 제출시 제4조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참가신청이 유효하다.
- ⑥ 신청마감일인 2022년 10월 31일(월)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.
- ⑦ 주최자가 기획한 특별전시전 및 전략적 유치활동에 따라 참가하는 업체의 참가신청과 참가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적용한다(외국기관이 다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참가하는 경우 포함).

제4조 (참가비 납부)

- ①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.
- ②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의 50% 이상을 납부해야하며, 잔금은 2022년 12월 16일(금)까지 완납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마감일인 2022년 10월 31일(월)까지 100% 완납할 경우 참가비의 10% 할인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.
- ④ 2022년 10월 31일(월)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는 참가신청과 함께 참가비의 100%를 완납해야 한다.
- ⑤ 2022년 10월 31일(월) 이전까지 참가비 50% 이상을 납부하고 최종납입기한(2022년 12월 16일)을 경과한 1개월(2023년 1월 16일)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 (전시위치와 면적 배정)

- ①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전시면적 규모 순, 동일 면적 시 참가신청(참가비의 50% 이상 납부) 순으로 전시위치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상기 원칙에 따른 배정이 어려울 경우 전회 모빌리티쇼 참가면적, 최근 3회 모빌리티쇼 참가횟수 등의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. 단, 주최자가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배정된 전시위치와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- ② 수입차업체(참가비의 50% 이상을 납부한 업체)에 대해서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가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라 전시위치와 면적을 배정한다.
-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소속 회원사가 참가 신청한 협회나 기관(단체)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소속 회원사의 전시위치 및 면적 배정을 결정한다.
- ④ 주최자가 모빌리티쇼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참가업체는 전시위치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.
- ⑤ 주최자는 자동차관련 용품(장식품, 액세서리 및 보조기기 등)을 전시·판매하는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전시품특성과 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임의로 전시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.
- ⑥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업체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최근 3회 모빌리티쇼 참여횟수를 고려하여 업체간 조정률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- ⑦ 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.

제6조 (모빌리티쇼의 취소 및 변경)

- ① 주최자가 천재지변,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모빌리티쇼를 취소 또는 변경,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업체에 발생된 손실(참가비,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)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.
- ②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빌리티쇼의 기간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의 귀책사유로 모빌리티쇼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업체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같음한다.

제7조 (참가업체의 참가계약 해지·취소 및 위약금)

- ①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모집공고” 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22-1호)와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관리 규정” 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2-1호)을 위반할 경우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또한 참가업체가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한다. 위 경우들에 대해서 주최자는 전체참가비에서 아래표에 따른 해약금/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 없이 환불한다.

해 지 시 기	해약금 / 위약금
2022. 11 01 - 2022. 12. 16	기준액의 50%
2022. 12. 17 - 2023. 01. 31	기준액의 80%
2023. 02. 01 - 2023. 03. 29	기준액의 100%

※ 기준액=(취소면적/배정면적)×전체참가비

※ 배정면적은 전시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시 신청면적으로 본다.

- ② 제1항의 취소시점은 참가업체의 전시참가 취소공문이 주최자에게 도착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- ③ 제1항의 “전체참가비”는 참가업체가 주최자에게 납부해야 할 총 참가금액을 말한다. 단, 참가비 중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제8조 (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)

- ① 참가업체는 “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” 과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”에 따라 자사 부스를 설치·관리 운영하여야 하며,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,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③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한 손상, 도난,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④ 참가업체는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.

- ⑤ 참가업체가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업체에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⑥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⑦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제2조에서 제시한 품목이외의 품목을 사전 허가 없이 전시·판매하여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전시장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, 현장에서 2회 경고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.

제9조 (보험부보)

- ① 주최자는 전시기간중 전시장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인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모빌리티쇼 전 기간동안 자사 부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 (보충규정)

- ① 킨텍스 “전시장 운영요령” 과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” 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, 참가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11조 (분쟁해결)

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,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